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6. 22 선고 2021나27388(본소), 2021나27395(반소) 판결

[매매대금 · 위약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6. 22 선고 2021나27388(본소), 2021나27395(반소)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5. 21 선고 2020가단122674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알찬, 박종민(소송구조)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B마을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변론 종결2022. 5. 11.

판결 선고2022. 6. 22.

제1심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5. 21. 선고 2020가단122674(본소),

2020가단122681(반소) 판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2천 3백만 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3,35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태안

판사윤경아

판사박남천